INNOPOLIS 인천서구강소특구

인천대학교

2024년 인천 강소특구 (기술사업화 사례/ 양방향/혁신네트워크)

2024. 10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천 민 우 차장/기술거래사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

Contents

1. 연구개발특구 개요
2. 인천 서구 강소특구 육성사업
3. 연구소기업
4. 첨단기술기업
5. 혁신네트워크 사업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인천 | 중부일보

정치 | 의정 | 경제 | 사회 | 선거 | 계양구 | 미추홀구 | 남동구 | 동구 | 부

인천 서구 환경 강소연구개발특구로 경제발전 날개 달다

송길호 | 입력 2022.05.11 16:57 | 댓글 0

인천시 서구지역 일대가 앞으로 5년 동안 약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4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 올 환경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인천시 서구지역 일대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날선 시선, 균형 잡힌 보도
일간경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경인 메트로 | 사람들 | 오피니언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년 '눈부신 성과'

안종삼 기자 | 입력 2023.07.27 18:44 | 수정 2023.07.27 18:52 | 댓글 0

기술이전 55건, 연구소기업 설립 15건 등 성과
화이트바이오 순환경제 산업기술연구조합 출범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 서구 강소특구 지정 1년 만에 기술이전 55건, 연구소기업 설립 15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7일 인천대학교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3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 1주년 성과보고회 및 화이트바이오순환경제산업기술연구조합 출범식'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내빈들과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7월27일 인천대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육성전략을 논의하는 성과보고회와 '화이트바이오 순환경제 산업기술연구조합'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천대학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천 서구 강소특구 내 입주기업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주요 임무

[연구개발특구법 제1조]

목 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

기대효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개 념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연구성과 사업화 +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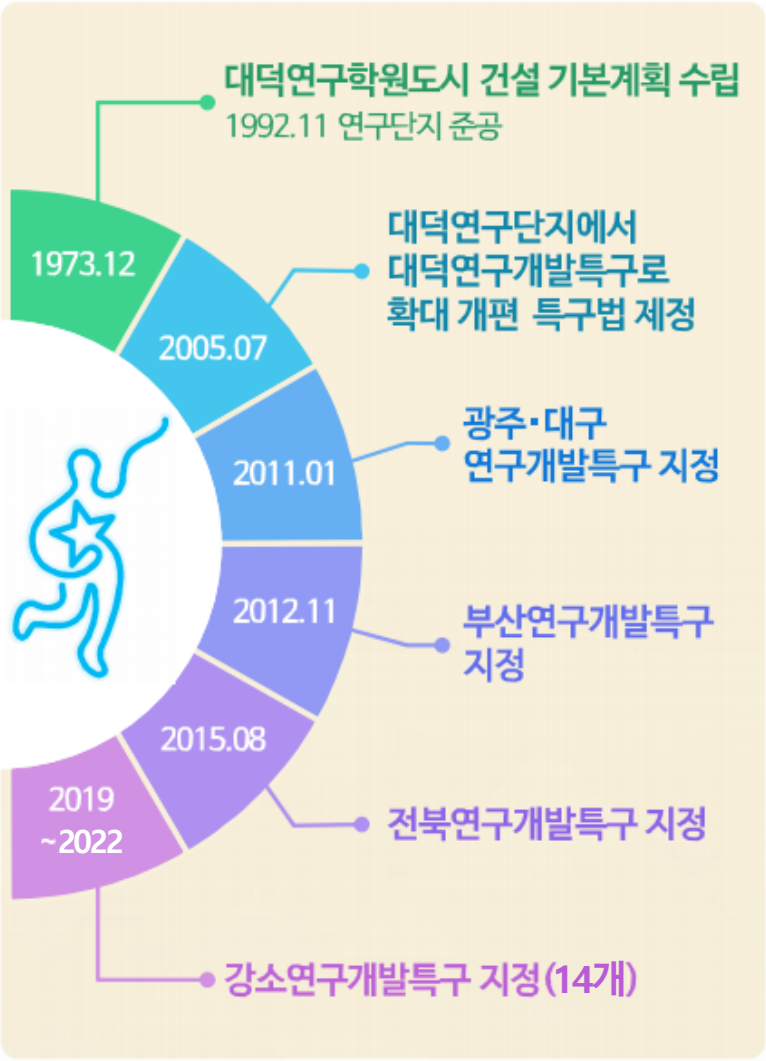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우수 거점·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고밀도 자족형 집약공간으로 육성

기존특구

규제편의 기반 요건으로 대형화·분산화

집적·연계효과 약화

- 규제편의 방식의 기관 수 충족 중심

강소특구

우수 핵심기관, 소규모 필수공간

집약효과 달성

- 보유 역량, 잠재력 검증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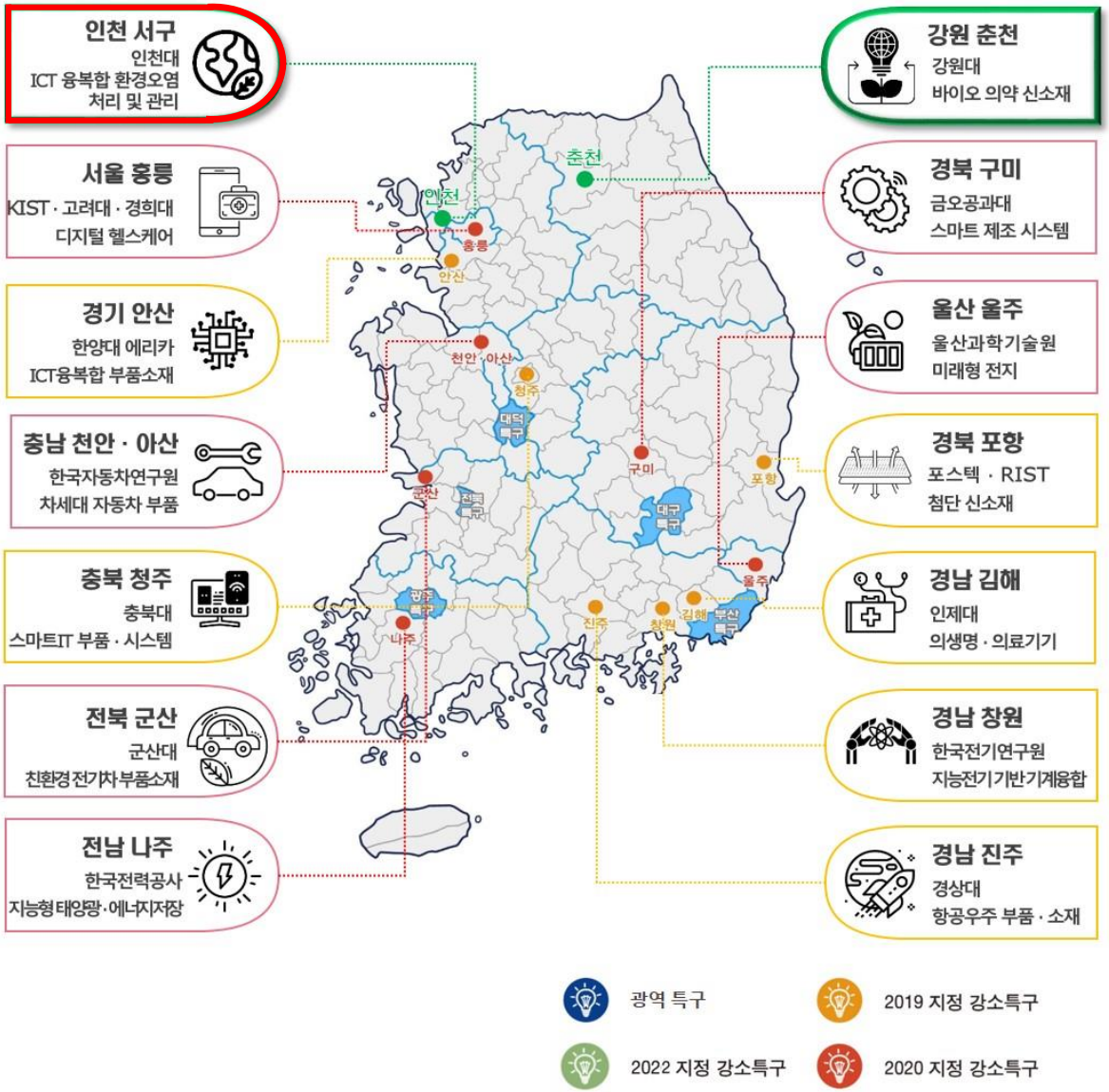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AI기반 환경관리
정의	• 환경 매개별 발생가능한 환경오염의 사후처리 및 사전오염방지 기술	• 탄소중립과 에너지저감을 위한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 전환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친환경 대체물질 개발	• 환경기술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 뉴딜기반의 AI와 IoT 등을 적용한 예측 및 의사결정에 따른 환경관리
주요기술			
혁신역량	• (기술핵심기관) 특허출원 총 50여개 • 바이러스 및 은 나노입자의 복합체를 이용한 수은이온 검출용 바이오 센서 등 50여개	• (기술핵심기관)) 특허출원 총 60여개 •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되메움재 제조방법 등 60여 개	• (기술핵심기관)) 특허출원 총 30여개 • 기계 학습을 이용한 실내 표면 온도와 결로를 예측하는 결로 예측 시스템 및 방법 등 30여개

01 연구개발특구 개요

공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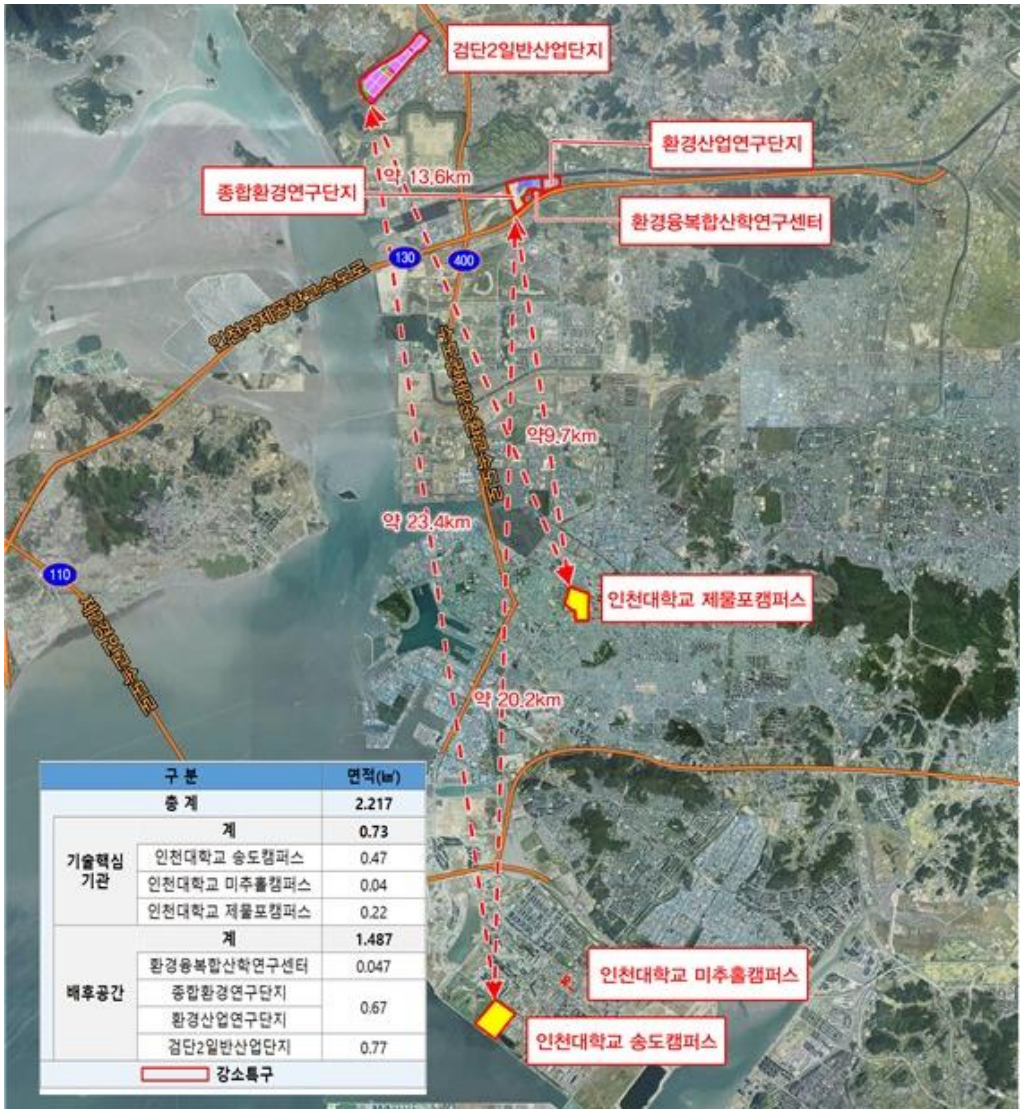

구 분		면적(㎢)
총 계		2.217
기술핵심기관	계	0.73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0.47
	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0.04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0.22
배후공간	계	1.487
	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0.047
	종합환경연구단지	0.67
	환경산업연구단지	
	검단2일반산업단지	0.77
강소특구		

02

인천 서구 강소특구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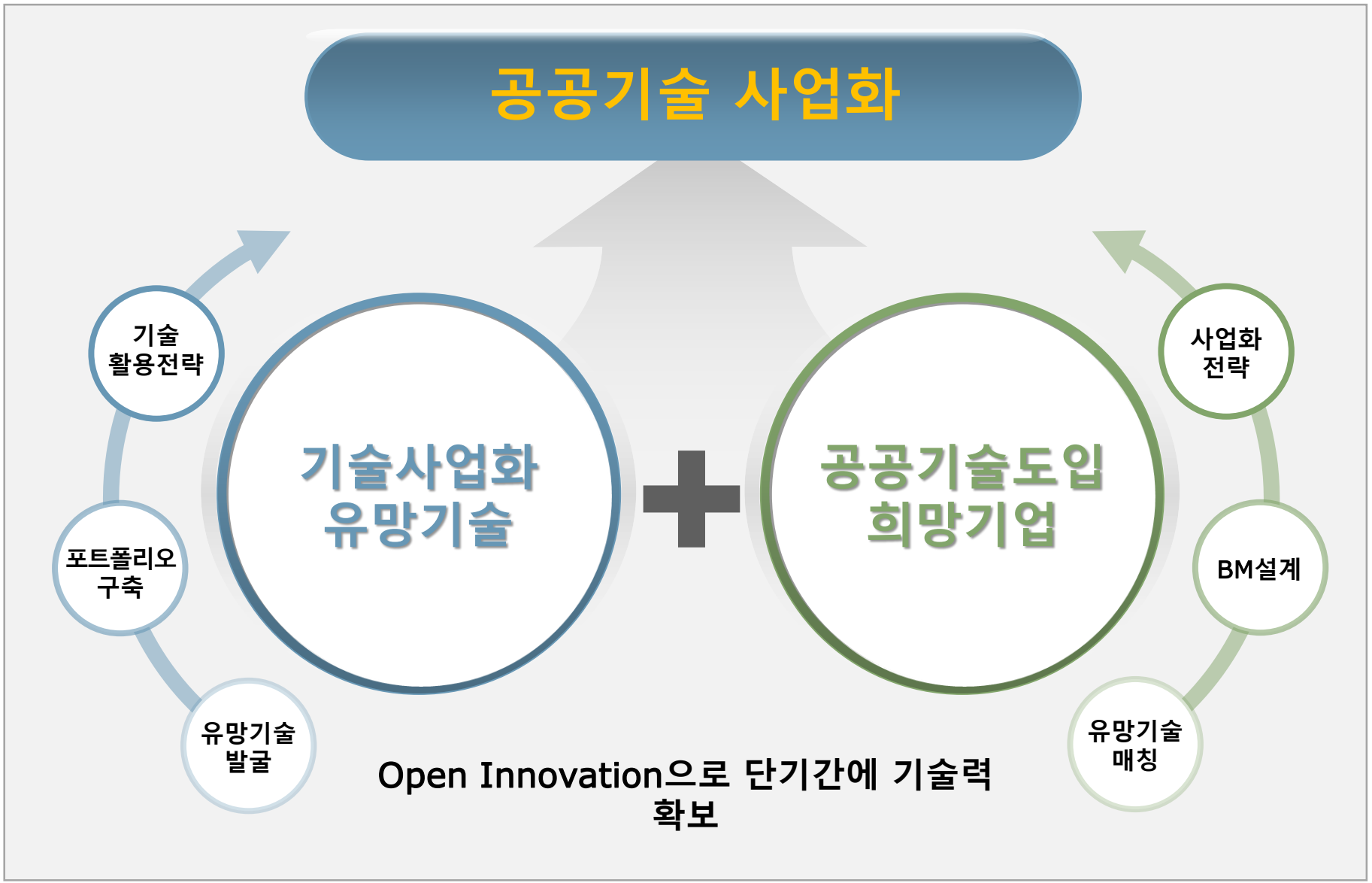
공공기술 사업화
기술사업화
유망기술
+
공공기술도입
희망기업
기술
활용전략
포트폴리오
구축
유망기술
발굴
사업화
전략
BM설계
유망기술
매칭
Open Innovation으로 단기간에 기술력
확보

02 인천 서구 강소특구 육성사업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 5년마다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며, 특구재단이 특구사업위 성공적 추진을 전담
- 관련 조항 :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46조(설립) 및 제49조(사업)"

02 인천 서구 강소특구 육성사업

02 인천 서구 강소특구 육성사업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사업

●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서구강소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는 지역 무관
- 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미추홀캠퍼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 소재 기업

● 세부 지원사업

유형	세부 사업	지원규모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교육	InnoCamp	20명(기업) (500만 원 내외)	• 사업계획서 작성 및 BM구축 • 투자유치, R&D기획 등
	Step-UP		• 창업아이템 검증 및 기업설립 지원
창업기업 사업화 ※ 선정평가 진행	Value-UP	30개 기업 (15백만 원 내외)	•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창업아이템 테스트베드 지원
	Scale-UP		• IR피치덱 제작 및 데모데이 •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등

특화분야 지원사업

지원대상 강소특구 내 입주 기업 및 혁신네트워트 분과 참여기업

지원규모 (※ 단일 또는 최대 2개 과제 패키지 형태 지원 가능)

R&D기획컨설팅

지원규모 **6개** (기업) **최대 20백만 원** 내외 (총 120백만 원)

- 기술개발을 위한 R&D 기획 컨설팅 지원
- 대상기업 제품 기능 등 기술개선 지원

마케팅지원

지원규모 **5개** (기업) **최대 20백만 원** 내외 (총 100백만 원)

-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 특화분야 기업의 마케팅 활동 집중 지원

시장조사분석

지원규모 **5개** (기업) **최대 10백만 원** 내외 (총 50백만 원)

- 기업의 기술 및 제품 시장조사분석 지원
- 기술수요, 시장전망, 사례분석 조사 등

IP컨설팅

지원규모 **7개** (기업) **최대 20백만 원** 내외 (총 140백만 원)

- 기업 니즈 맞춤형 특허출원 전략 및 IP 가치평가
-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전략, 권리 확보 전략 컨설팅

IP FIRM
KIM, LEE & PARTNERS

02 인천 서구 강소특구 육성사업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지원대상 강소특구 내 특화분야 기술수요기업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기업)

- 인천서구강소특구 내 소재기업 (인천대학교 송도/미추홀캠퍼스, 환경산업연구단지)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 소재기업 중
  - ① 특화분야 기업
  - ※ 특화분야 :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AI기반 환경관리
  - ②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 ③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지원규모

환경기술 융합혁신 과제

지원 규모 8개 (기업) 최대 70백만 원 내외 (총 560백만 원)

- 기술핵심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출원 또는 등록 특허, 노하우기술)을 기술이전 받아 대상기업 제품의 기능 등을 공동 기술개발
- 기업의 기술개선 및 기술사업화 등 지원

특화성장 패키지 과제

지원 규모 10개 (기업) 최대 31.5백만 원 내외 (총 315백만 원)

- 대상기업 제품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 진입 전단계에 필요한 지원
-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평가, 시험분석 및 인증, 경영·기술사업화 전략, 기술고도화, 제품고도화 등 지원

기술이전사업화(R&BD)사업

목 적

■유망 공공기술을 발굴하여 수요 기업에 이전 및 출자,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적 타당성 검증, 시험 · 분석평가, 기술패키징,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 · 인증, 양산기술 개발, 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지원내용

■신규 지원과제(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지원분야	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지원규모	2억원 이내/1년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지원대상	2023년 신규 선정 과제
공고기간	추후 연구개발특구 홈페이지 게재 예정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TRL 5~6) ※ BT 분야는 TRL 4 이상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공고 점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

03
연구소기업

03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제도'란?

연구소기업은 **특구내 본사가 소재하고,** 특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지분의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01 **자회사를 설립하여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견기업** (합작투자형)
02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신규창업형)
03 **몇 년째 성장정체로 고민중인 중소기업** (기존기업 전환형)

지정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 득 세	면 제
재 산 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참고]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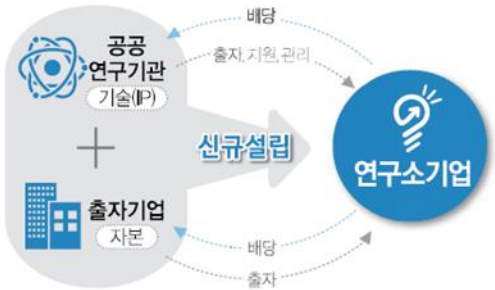

1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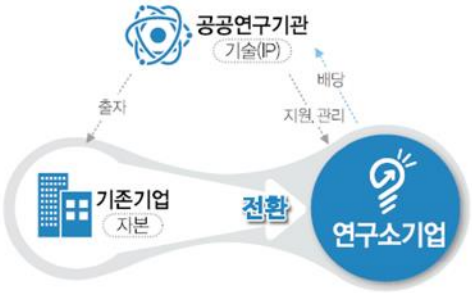

2 기존기업전환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3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관련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6, 제9조의 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
- (1)공공기관 등이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10% 이상 보유
- (2)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3)특구지역 안에 설립

세제지원 ▶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소
- 취득세 : 면제 (확인 필요)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설립현황 ▶

코스닥기업

연구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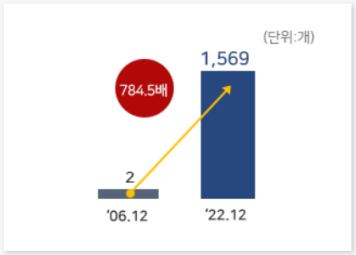

첨단기술기업

03 연구소기업

기술출자방식(연구소기업)과 기술라이센스방식의 비교

구 분		기술출자 방식 (연구소기업)	기술라이센스 계약 방식 (기술 실시권 허여)
개 념		기술(실시권 포함)을 직접 기업에 출자하고 지분으로 대가를 받는 방식 • 연구소기업 : 출자지분 20% 이상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기업에게 기술의 실시권을 부여하고, 대가로 현금을 취득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구성
기술이전 대가		배당금 및 지분 매각 대금 • 기술의 미래가치에 투자 개념	정액 및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 : 정액으로 현금화하여 징수 •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3%~5% 수준 • 선금+경상 : 일부를 현금, 일부는 경상 기술료로 징수
특징	절차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성분석 등 보다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	기술도입 기업 발굴 및 협상 과정이 중요 • 기술이전 대가가 협상에 의해 결정됨
	사업화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이 후속개발에 지속적으로 직접참여, 사업화기간의 단축과 높은 완성도 기대 가능	기술이전 이후의 사업화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큼
	연구자	참여연구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화 성공시 획기적 인센티브 가능 • 성공시 지분 매각에 따른 고수익 가능	연구원 인센티브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배분에 따름
	기타	기업의 신사업부서의 Spin-Off 등 신규 창업효과와 고용효과 기대	기업의 제품성능개선, 지재권보호 등 다양한 전략에 활용가능
위험도	기업	지분제공 결정까지 사업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야하는 등 사전투자 비용은 높음	이전기술의 가격에 따라 기업의부담이 차이가 있음 • 이전가격 < 사업화 효익 ⇒ 사업화 포기
		기술을 지분으로 확보하여 사업화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은 낮음	비교적 낮은 가격에 이전받은 기술이라면 반드시 사업화에 성공해야 하는 부담은 낮음
		연구소기업 설립시 출자기술의 사업화 성공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음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형태이므로 사업화 실패시 현금화 불가	정액기술료로 계약체결시 이전즉시 현금화가 가능
		하지만, 사업화 실패시 해당기술은 즉시 회수되며, 추가이전 가능	경상기술료 계약시, 매출액을 추적하여 징수해야하는 부담
		폐업후 대표자 잠적 등 연락두절시 회수의 어려움은 존재(출자시 조치필요)	이전기업이 사업화 포기시, 실시기간까지는 회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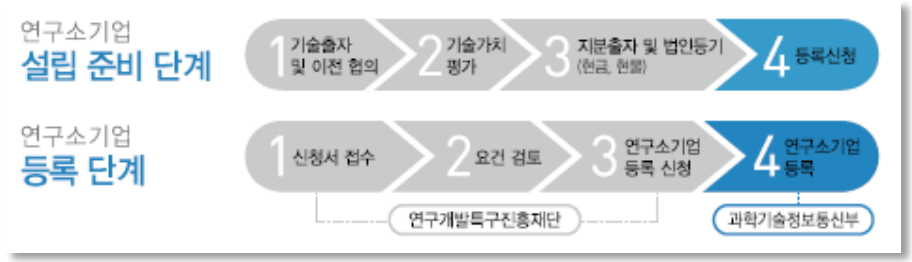

설립 절차	주요 업무
1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 출자 기술 발굴 ▪ 기술 출자의 타당성 검토 [해당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 확인, 해당 기술의 우수성 검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의 타당성 검토(수요 기업이 제안하는 경우), 기술 수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 검토] ▪ 심의 및 선정
2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및 공동 출자자 선정	▪ 단독 또는 공동 설립 여부 결정 (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 공동 출자자 (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자) 발굴 (설명회 개최 등) ▪ 공동출자자 평가 및 선정
3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 설립 주체 간 기본 합의서 작성 및 체결 (출자 대상 기술 선정, 설립 주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
4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 기술평가기관 선정 ▪ 기술평가 신청, 계약체결, 평가진행, 평가서 수령
5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 사업타당성 평가 (기술평가기관) ▪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및 확정 ▪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 내부 규정 정비
6 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 ▪ 현물(기술 등) 및 현금 출자 ▪ 법인 등기 (설립등기, 변경등기) ▪ 연구소기업 설립 결과 보고
7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 등록 신청 (특구진흥재단) ▪ 등록증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소기업 사전 준비

▶자회사 설립 신청서
▶기술출자 계획서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
▶투자심의위원회 보고 자료
▶요건검토위원회 자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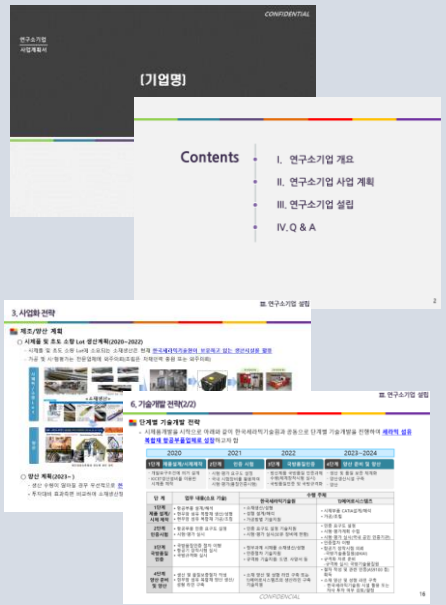

[투심위 발표자료 양식]

I. 배경 (WHY)
- 기업 소개
- 사업 추진 배경
- 기존 사업 영역의 한계
- 사업화 방향

II. 연구소기업 사업 계획 (WHAT)
- 사업화 대상
- 시장현황 및 전망
- 시장진입 및 성장전략
- 대상기술 개요
- 대상기술의 차별화 포인트
- 기술개발 전략

III. 연구소기업 설립 (HOW)
- 설립예정 기업 현황
- 대표 역량
- 경쟁사 대비 차별화 전략
- 사업화 전략
- 기술이전 및 지분출자 조건

[투심위 발표자료 목차]

연구소기업 등록 제출 서류

▶대학, 기술지주 및 기업이 준비 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다양한 case를 고려한 양식 제공
▶투심위 준비부터 요건검토위원회 서류제출까지 일련의 절차 진행에 맞춰 서류 준비 지원 가능

번호	제출 서류 명	비고
1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서	출자기관
2	연구소기업 정관	기업
3	보유인력 및 시설현황	기업
4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주식보유명세서)	기업
5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평가 포함)	기업(수행기관)
6	연구소기업 법인등기부등본	기업
7	연구소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
8	특허증빙서류	출자기관
9	기술평가서	기업(수행기관)
10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출자기관/기업
11	출자기관 이사회 의사록	출자기관
12	출자기관 내부품의서	출자기관
13	출자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출자기관
14	출자기관 사업자 등록증	출자기관

콜마비엔에이치㈜

kolmar 콜마비앤에이치

헬스케어(면역, 항암효과 제품)

- ◈ 제1호 연구소기업('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
- ◈ 연구소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 ('15.02.03)
- ◈ 시가총액 약 1조 2천억원
- ◈ 연평균 **매출액 85.5% 증가, 고용 38.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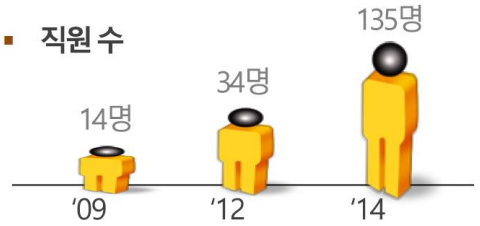

㈜ 매크로그래프

MACRO GRAPH

- ◈ 제5호 연구소기업('06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글로벌 영화 CG전문 회사
  ('15년말 157억, 152명 직원)
- ◈ 한국영화 명량, 더테러라이브
- ◈ 주성치 영화 "서유기" – 중국 역대 흥행 1위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

04

첨단기술기업

04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에만 있는 **기술기업 특화지원제도**로
첨단기술분야의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정 의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 (특구법 제2조)

지정 요건

① 특구에 입주한 기업(공장, 연구소 등 포함)
② 산업발전법 혹은 과기정통부장관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특허권 보유)
③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
④ 총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매출액에 따라 3~5% 이상
(총매출액 50억 미만 5%, 50억~200억 미만 4%, 200억 이상 3%)
※ 단, 연구시험용 시설취득 비용 상한은 각 비율의 60%로 함

지정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 득 세	면 제
재 산 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지정 절차

01 신청접수 On-line → 02 자격요건심사 외부기관 → 03 최종확인 특구진흥재단 → 04 과기정통부 승인 → 05 첨단기술기업 인증

04 첨단기술기업 : 신청 절차

STEP 01
후보기업

기업 소재지 확인 (특구 여부)

보유특허 검토(**첨단기술여부 확인**)

매출액 대비 첨단기술 매출(20%)/**연구개발비**(3~5%)

→ 첨단기술·제품 범위 해당 여부 사전 검토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 산업분야 >

01. 탄소/나노융합	19. 이차전지
02. 섬유의류	20. 생산시스템
03. 화학공정소재	21. 로봇
04. 세라믹	22. 자동차
05. 바이오	23. 조선해양
06. 금속재료	24. 항공
07. 생산기반	25. 드론
08. 반도체	26. 에너지자원
09. LED/광응용	27. 원자력
10. 디스플레이	28. 신재생에너지
11. 네트워크	29. 전력
12. 이동통신	30. 기반SW컴퓨팅
13. 방송	31. 융합SW
14. 전파위성	32. 임베디드 SW
15. 정보가전	33. 지식서비스
16. 스마트서비스	34. 플랜트엔지니어링
17. 정보보안	35. 정청기반
18. 의료기기	

※ 연구개발비 인정 항목 : ①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의 인건비, 재료비, 시험시설비 등, ②공공연구기관에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 비용

STEP 02
첨단기술·제품확인

<첨단기술·제품확인 신청서 >

- 대상특허 확정
- **특허/기술/제품/시장 일관성**
- 기술의 우수성 중심으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제출 후 2주 내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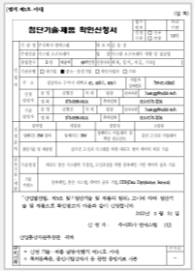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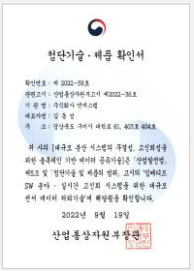

STEP 03
첨단기술기업 신청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첨단기술·제품확인서
- 제무재표 및 감사보고서
- 연구개발비 산정/원장 등

<현장실사>

- 기업부설연구소 : 시술공간 /상주 인력 확인

※ **필요시 현장실시에서 어필 가능**

(첨부서류) 1. 특허등록 원부
2. 첨단기술·제품확인서

(첨부서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①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
②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부가세 표준 증명원
③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매출액 증명서

(첨부서류) 별표 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및 근거서류 목록
① 연구개발비 산정표 파일 다운로드
②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
③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④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발급을 통한 혜택 및 세제지원을 통한 첨단기술기업 혜택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발급 혜택

- 법인등록세 중과 제외(지방세법)
- 과밀억제지역 내 입지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내 우선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금지원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
- 투자진흥지구 지정(입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등)

기타 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국·공유재산 사용 · 수익 ·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지원

+

세제지원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세 감면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연구소기업 등록한 일로부터 5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

특구별 지방세 감면

-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각 지역특구별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적용

※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의2(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04 첨단기술기업 : 설립사례

첨단기술기업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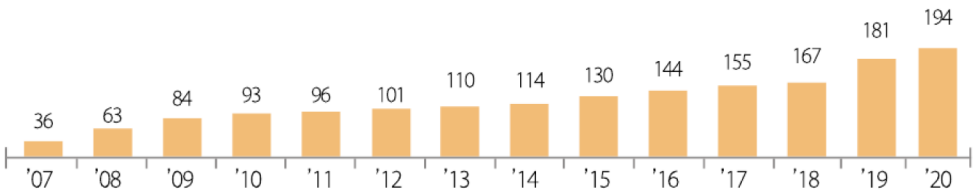

첨단기술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매출증가율 **17.9%**

고용증가율 **13.8%**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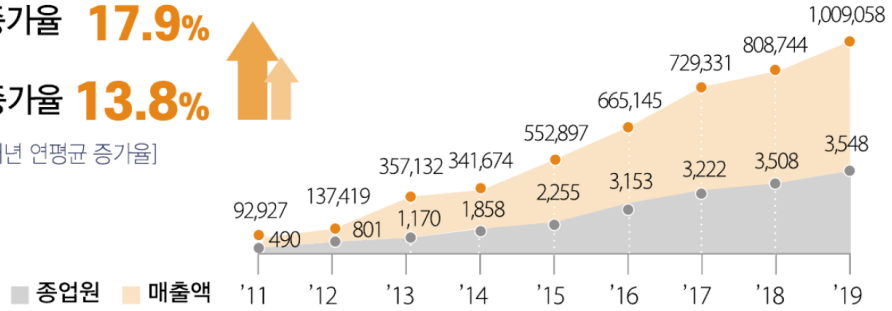

첨단기술기업 중 약 **58%**가 재지정 신청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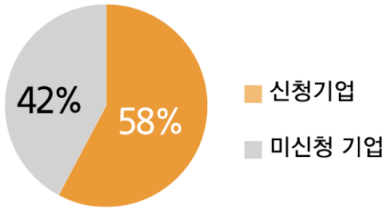

골프존 GOLFZON

- 제 45호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총 3회(6년간)** 지정
- 코스닥 상장(2015.4.3)
- 지정기간동안 **약 300억원 이상 세제감면**을 수혜받아 신규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에 주력
- 사업분야: 영상게임기 제조

실리콘웍스 Silicon Works

- 제 24호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총 3회(6년간)** 지정
- 코스닥 상장(2010.6.8)
- 지정기간동안 **약 170억원 이상 세제감면**을 통해 고도화된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높은 기술력 확보
- 사업분야: 반도체 제조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

05

혁신네트워크

01 혁신네트워크 사업 취지

혁신네트워크 사업 목적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기술사업화 거점 구축)에 대해 특구 내 혁신주체 및 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 촉진 도모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분야	협력Value-up R&B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5. 03 예상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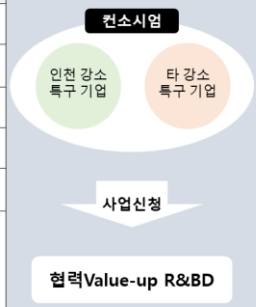

인천 특구 실증 관련 MOU 체결

No.	인천 지역 실증기관	
1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2	인천시설공단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3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 (환경회복 거버넌스)

분과협의체

분과 구분		분과위원 (교수)		소속 기업 수
1분과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이도균 교수	도시환경공학부	17개 기업
		김승규 교수	해양학과	
		송창근 교수	안전공학과	
		안정규 부교수	도시환경공학부	
2분과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김장균 교수	해양학과	45개 기업
		강동구 부교수	체육학부	
		허진 교수	전기공학과	
		전경구 교수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3분과	AI 기반 환경관리	김우일 교수	컴퓨터공학부	18개 기업
		김재곤 교수	산업경영공학과	
		김지범 교수	컴퓨터공학부	
		신유현 교수	컴퓨터공학부	

1. 계약주체 : 인천대학교 총장 – 산업체 대표(서면계약 체결)
2. 개설학과 : 녹색환경융합학과
3. 모집과정 : 석사과정(환경융합학 공학석사)
4. 운　　영 : 25학년도 1학기~
5. 모집시기 : 매 학기 상시모집
6. 지원자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자
7. 교육과정 : 선택/필수 구분없이 개설된 교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
8. 교　　양 : 열린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자택 및 직장에서 수강
9. 수업시간 :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며 학과에 따라서 수업 시간표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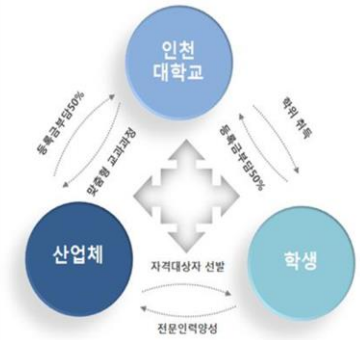

02 과제 지원 (협력 Value-up R&BD)

협력 Value-up R&BD

▶강소특구간 연계를 통해 공공기술을 이전(또는 출자)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또는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2개 이상 강소특구의 기업이 협력하는 사업화 과제를 대상으로 중대형 R&BD (제품화.양산화.사업화) 과제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분야	협력Value-up R&B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과제별 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5. 03 예상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까지만 동시 수행할 수 있음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④ 과제 수행 기업은 예산 일부 활용하여 후속 사업화 추진을 위한 IP를 창출하고, 결과를 최종평가에 제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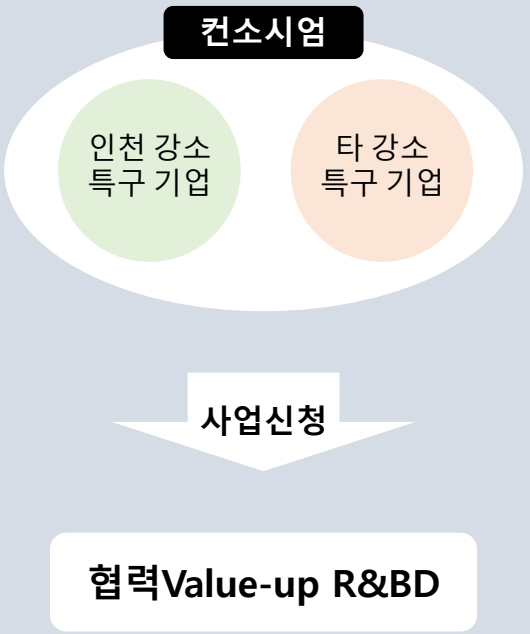

03 지역연계 실증화 지원

지역연계 실증화

▶인천 지역 실증기관인 인천환경공단,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시설공단, 가좌1동 도시재생 협력체계 등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사업하는 아이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인천 특구 실증 관련 MOU 체결

No.	인천 지역 실증기관	
1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시설
2	인천시설공단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생활시설
3	가좌1동	도시재생사업 (환경회복 거버넌스)

분과협의체

▶인천 특구의 특화분야에 따라 구축된 분과협의체를 중심으로 분과별로 소속된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적, 사업적 니즈를 발굴하여 이를 분과 내에서 구성원들 간 심도깊게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진행

- 특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참여율을 높이고 애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분과협의체

분과 구분		분과위원 (교수)		소속 기업 수
1분과	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이도균 교수	도시환경공학부	17개 기업
		김승규 교수	해양학과	
		송창근 교수	안전공학과	
		안정규 부교수	도시환경공학부	
2분과	폐기물 자원화 및 대체물질 개발	김장균 교수	해양학과	45개 기업
		강동구 부교수	체육학부	
		허진 교수	전기공학과	
		전경구 교수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3분과	AI 기반 환경관리	김우일 교수	컴퓨터공학부	18개 기업
		김재곤 교수	산업경영공학과	
		김지범 교수	컴퓨터공학부	
		신유현 교수	컴퓨터공학부	

05 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관 및 기업의 등의 요구에 의하여 등록금 부담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간 동안 정원 외 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1. 계약주체 : 인천대학교 총장 – 산업체 대표(서면계약 체결)
2. 개설학과 : 녹색환경융합학과
3. 모집과정 : 석사과정(환경융합학 공학석사)
4. 운　　영 : 25학년도 1학기~
5. 모집시기 : 매 학기 상시모집
6. 지원자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소속으로 4대보험 가입자
7. 교육과정 : 선택/필수 구분없이 개설된 교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
8. 교　　양 : 열린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자택 및 직장에서 수강
9. 수업시간 :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며 학과에 따라서 수업 시간표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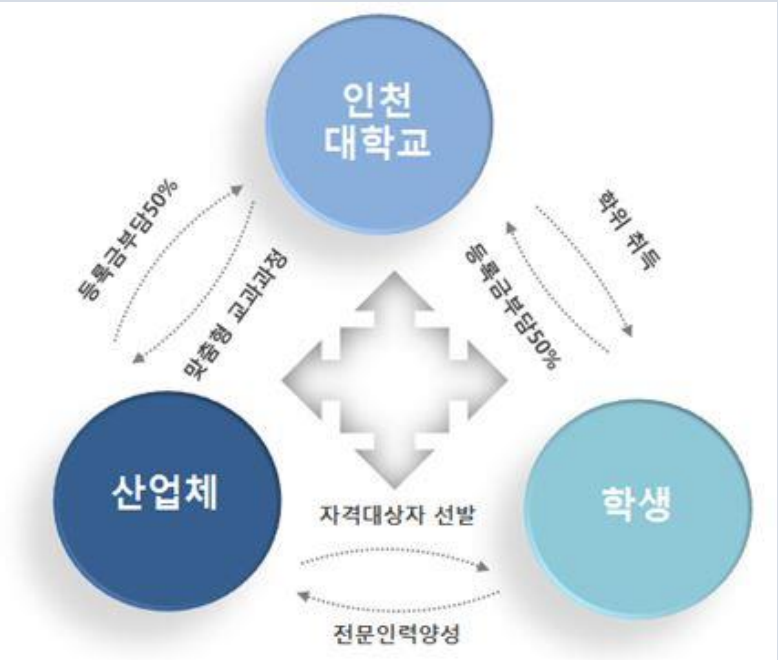

THANK YOU!

천민우 차장/기술거래사

A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 광성빌딩 본관 12층

T 070-8676-7158

E mwchun@klpip.com

KLP IP FIRM
KIM, LEE & PARTNERS